

[별표 2] <개정 2001.1.22, 2001.9.13., 2002.12.9>

과징금의 금액(제12조제1항관련)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조문 | 사업자종류별 과징금액 | | | | | | |
|---|----------------|-------------|-------|-------------|----------------|-------------------------|-----------------|-------|
| | | 석유정제업자 | | 석 유 수출입 업 자 | 석 유 판 매 업 자 | | | |
| |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 등 록 대 상 | | | 신고 대상 |
| | | | | | 일반대 리점/ 용제대 리점 | 주유소 /용제 판매소 /부생 연료유 판매소 | 부산물 인석유 제품판 매업자 | |
| 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 - | - | 5천 만원 | 3천 만원 | 4천 만원 | |
| 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 하거나 다른 석유 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 - | - | 3천 만원 | 1천5백 만원 | 2천 만원 | 8백 만원 |

| | | | | | | | | |
|--|--------------------------------------|-----|------------|------------|----------|----------|----------|----------|
| 공급한 때 | | | | | | | | |
| 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한 때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억원 | 1억원 |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 3천 만원 | 4천 만원 | 1천 만원 |
| 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 위반한 때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억원 | 1억원 |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 3천 만원 | 4천 만원 | 1천 만원 |
| 마. 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한 최고액 또 는 최저액을 위반 하여 석유를 판매 한 때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억원 | 1억원 |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 3천 만원 | 4천 만원 | 1천 만원 |
| 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 3천 만원 | 4천 만원 | 1천 만원 |
| 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 법 제14조 |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 3천 만원 | 4천 만원 | 1천 만원 |

| | | | | | | | | |
|---|--|------------|------------|------------|-------------|-------------|-------------|-------------|
| <p>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 <p>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p> | | | | | | | |
| <p>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때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p> | <p>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p> | <p>2억원</p> | <p>2억원</p> | <p>2억원</p> | <p>6천만원</p> | <p>4천만원</p> | <p>5천만원</p> | <p>2천만원</p> |

| | | | | | | | | |
|--|-----------------------|-----|--------|--------|------|--------|------|------|
| 의 경우 (2) 기타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억원 | 2억원 | 2억원 | 7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 3천만원 |
| 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억원 | 1억5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차.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3천만원 | 1천5백만원 | 2천만원 | 8백만원 |
| 카.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1억원 | 5천만원 | 8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5백만원 |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text{수}/365 \times \text{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정부비축용시설의 건설단가(석유사업자는 원유, 가스수입업자는 LPG)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부터 과징금부과일까지로 한다.

라. 연간대출금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text{기준비축 미달물량} \times \text{국내평균 수입단가} \times \text{환율} \times \text{비축의무 불이행일수}/365 \times \text{연체이자율}$

가. 기준비축 미달물량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3월전에 월의 초일부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을 말한다.

나. 국내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중 다음 석유제품의 국내평균 CIF(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에 한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자는 프로판

3)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당해 석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를 적용한다.

다.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의 3월전에 월의 초일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환율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3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그가 비축한 원유 및 석유 대여에 관하여 정한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라.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초일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